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내

2022. 02.

경기지역본부

I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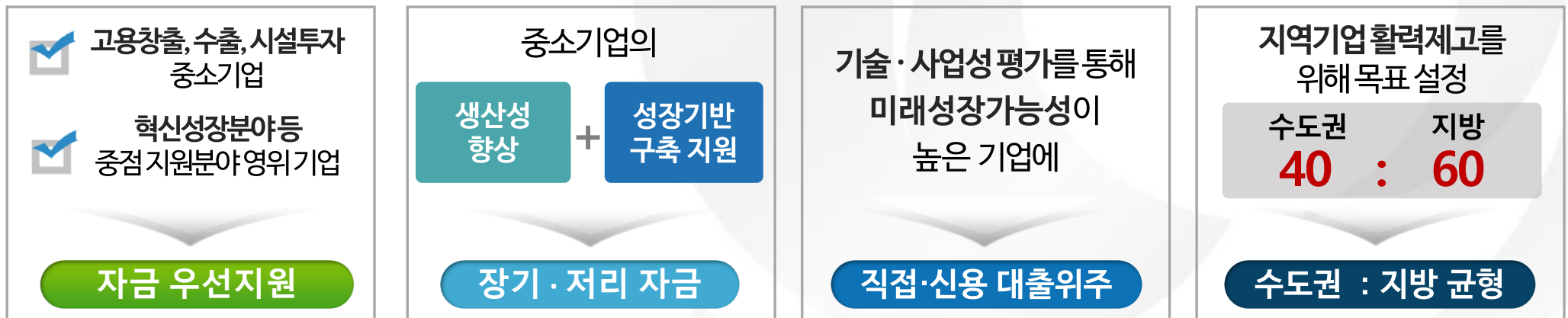
2022년 세부 자금 별 지원계획

01. 정책자금 용자지원

정책목적

- ☑ 민간금융 자금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 등에 중점 지원**
- ☑ 생산파급효과와 고용흡수력이 높은 **혁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

정책방향



용자대상

- ☑ 용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용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 대상에서 제외

02. 정책자금 규모

(단위 : 억원)

사업	예산	내역사업	사업분야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3,000	• 창업기반지원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지원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지원 특허개발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투융자복합금융	1,200	• 성장공유형 대출 • 스케일업금융	전환사채 인수방식 회사채 인수로 유니콘기업 육성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000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신성장기반자금	16,200	• 혁신성장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Net-Zero 유망기업 자금 • 사업전환, 무역조정자금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친환경·저탄소 기업지원으로 그린경제 촉진
 재도약지원자금	4,200	• 구조개선전용자금 • 재창업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업종전환(추가) 및 FTA 무역피해기업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실패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	• 일시적 경영애로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예산 총계 : 50,600			

03. 정책자금 기준금리

$$\text{정책자금 금리} = \text{① 기준금리} + \text{② 사업별 가감금리}$$

① 기준금리 ('22.1분기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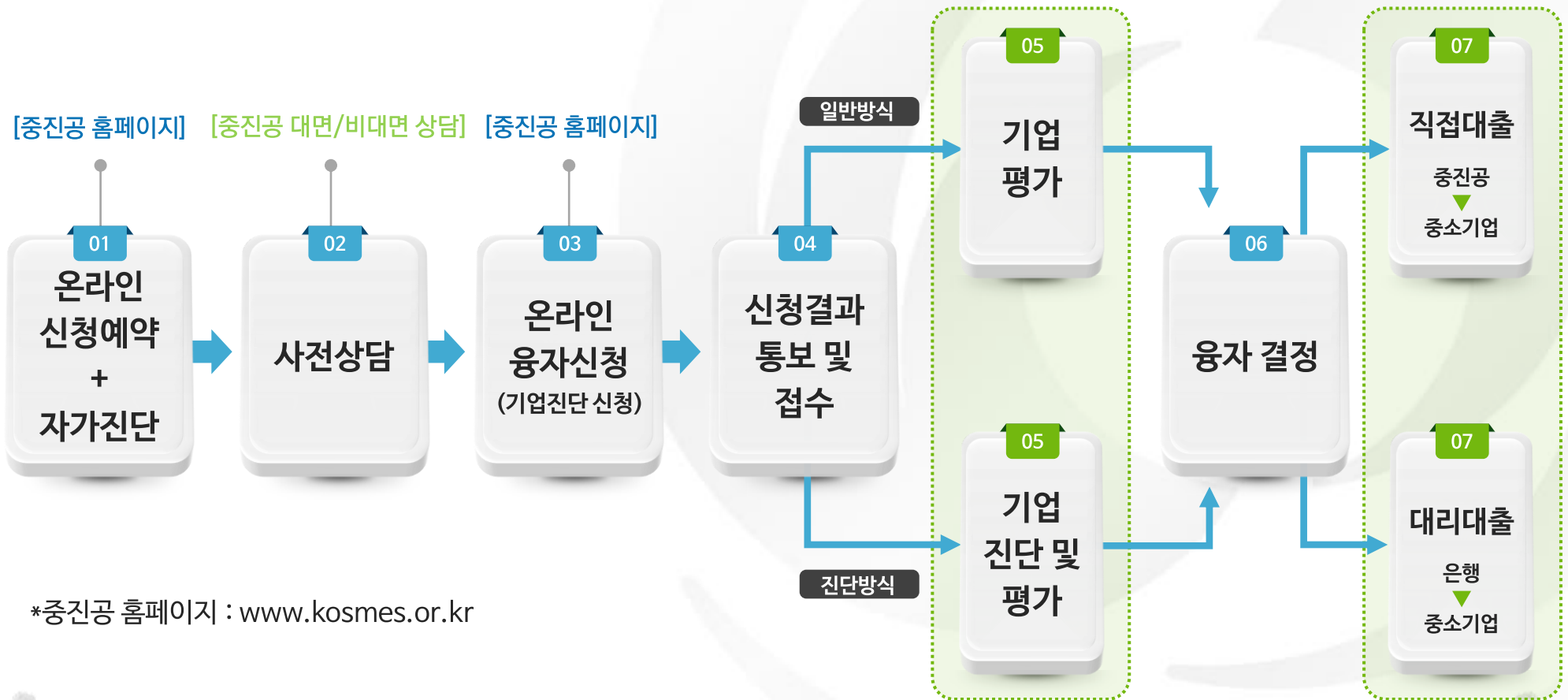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연동(조정계수 가감)

* 분기별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전전분기 종료일 21일 ~ 전분기 종료일 20일 '누적 평균'

② 사업별 기준금리 그룹

	자금명	사업별 기준 금리
A그룹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0%p
B그룹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신시장진출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신성장기반자금 [혁신 성장유망(협동화), 제조현장스마트화]	정책자금 기준금리
C그룹	신성장기반자금 [혁신성장유망, 산업경쟁력강화, Net-Zero 유망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p

04. 정책자금 지원절차



05. 융자 신청 및 접수

융자신청은 온라인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
하여 상담 진행

-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융자신청서 제출

-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 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책 우선도
평가를 실시하여 시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06. 융자제한 대상

☞ 융자제한기업

- ① 휴 · 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 · 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⑥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사유로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⑩ 중진공 지정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등 한계기업
- ⑪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⑫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등 우량기업
-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http://sims.go.kr>을 통해 확인)
- ⑭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⑮ 최근 5년간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서 확인

※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①~ ⑮)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07. 정책자금 집행방식

진단기반 맞춤형연계지원

* 기업 여건에 따라 Two-Track(기업진단 연계 또는 일반지원)으로 운영

정책자금



08.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제3자 부당개입 제재기준

-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 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할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중진공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08.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제3자 부당개입 제재조치

부당개입 행위자

- 부당개입 활동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되거나 정책목적성이 훼손될 경우 형사 고소·고발, 자격정지 및 정부사업 참여 제한 조치

부당개입 중소기업

- 융자자금 조기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신고자

- 범죄사실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오프라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온라인) 중진공 홈페이지 → 참여광장 →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온라인신고센터

I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

II

2022년
세부 자금 별
지원계획

01.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 창업기반지원자금

☒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용자규모** 13,000억원(청년전용창업자금 2,100억원 포함)

01 용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
- 사업개시일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 대표자가 연구소,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등 시니어기술창업 및 비대문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 포함

02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22년 1분기 기준금리 2.15%)

03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04 대출한도

- 업체당 잔액기준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70억원)
 -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 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 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05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01.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일자리창출촉진)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 **용자규모** 7,000억원

01 용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
- 사업개시일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 일자리창출촉진 : 3년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성과공유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02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22년 1분기 기준금리 2.15%)

03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04 대출한도

- 업체당 잔액기준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70억원)
-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 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 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05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01. 혁신창업사업화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 ☒ **사업목적**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
- ☒ **융자규모** 2,100억원

01 융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융자시점에 사업자등록 필요)

02 대출금리(고정금리)

연 2.0%

03 대출기간

시설 10년 이내(거치 4년)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운전 6년 이내(거치 3년)

04 대출한도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 2억원 이내
 기타업종 1억원 이내
 * 대출한도는 운전 및 시설자금 합산 금액임

05 지원방식 (융자상환금조정형)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01. 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 **용자규모** 3,000억원

용자대상

■ 다음 하나의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2년 1분기 기준금리 2.15%)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02. 투융자복합금융

투융자복합금융

- ✓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 도모
- ✓ **융자규모** 1,200억원

신청 대상

성장
공유형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크고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스케일업
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마련하고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02.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조건



회사채·우선주 인수 방식

- ☑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주 인수 방식으로 자금지원
- ☑ 지원기간 내 IPO가능성 등 판단하여 전환권 행사(중진공 결정)
- ☑ 미 전환 시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우선주 인수방식은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해당사항 없음
단,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금리는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P-CBO 방식(스케일업금융)

- ☑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지원
 - * 선·중순위 증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중진공이 인수하여 조달된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
- ☑ 발행 금리 및 상환 방법은 발행차수, 발행증권,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회사채 · 우선주 인수 방식

P-CBO 방식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기업당 15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

3년 이내

03.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 **용자규모** 1,500억원

01 용자대상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불~10만불 미만)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 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정부가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우수 제품”제조기업으로 인증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특허,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02 용자범위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03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2년 1분기 기준금리 2.15%)

04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05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

06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03.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 **용자규모** 2,500억원

01 용자대상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의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참고1])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특허,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02 용자범위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03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2년 1분기 기준금리 2.15%)

04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05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단,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06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04.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
-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촉진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용자규모

16,200억원

* 혁신성장지원 9,000억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6,000억원, Net-Zero 유망기업지원 1,200억원

용자 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취약업종 영위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 기반 등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 용자제한기업 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 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04. 신성장기반자금

01 용자범위

-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도입, 사업장건축(토지구입비 포함),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유통 물류시설 설치,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자금 등
 - * 협동화자금은 토지구입비 지원 시 조건 예외 적용,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시설자금 50% 이내), 별도기준 충족 시 운전자금 융자가능*
 - *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스타트업100, 경쟁력위원회 추진기업

02 대출금리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에서 0.5%p 가산 ('22년 1분기 기준금리 2.15%)
 -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03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04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 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 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05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05.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

- ☒ **사업목적** 재창업 및 구조개선, 사업전환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 **융자금모** 4,200억원

01 융자대상

재창업자금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자
-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별도 지원

구조개선전용자금

다음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경영정상화 가능기업
- *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A,B,C 등급, 은행 자체워크아웃 추진기업,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요주의' 등급이하, 3년연속 영업현금흐름(-),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정 경영애로(부실징후 기업으로 지정) 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 판정기업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천한 물납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기업 심층심사를 통해 기업구조개선계획 수립 후 신규대출,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

05.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① 업종전환 등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개념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업종전환	업종추가
전환내용	현재영위업종 사업용 자산양도, 폐기→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전환비중	3년 내 완전전환	3년 내 30% 이상

- * 전환비중 : 전환(추가)업종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 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10%이상 감소 ▪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 변화를 종합적 고려)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05. 재도약지원자금

01 용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 및 시험검사 설비, 정보화 설비,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 소요경비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만 지원 가능(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은 시설도 가능)

02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재창업 및 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4년 이내)

* 재창업 및 사업전환자금의 운전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03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2년 1분기 기준금리 2.15%)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은 연 2.5% 고정금리

04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10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05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은 직접대출

06. 긴급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 **용자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원

0 용자대상

|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0 용자범위

-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라.용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개성공단 입주 철수 기업, 기타 중기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 부진 등은 제외)
 -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0 대출금리
(기준금리)

-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22년 1분기 기준금리 2.15%)
 - 재해중소기업(고정금리) : 연 1.9% 고정금리 적용

0 대출기간

- |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0 대출한도

-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0 대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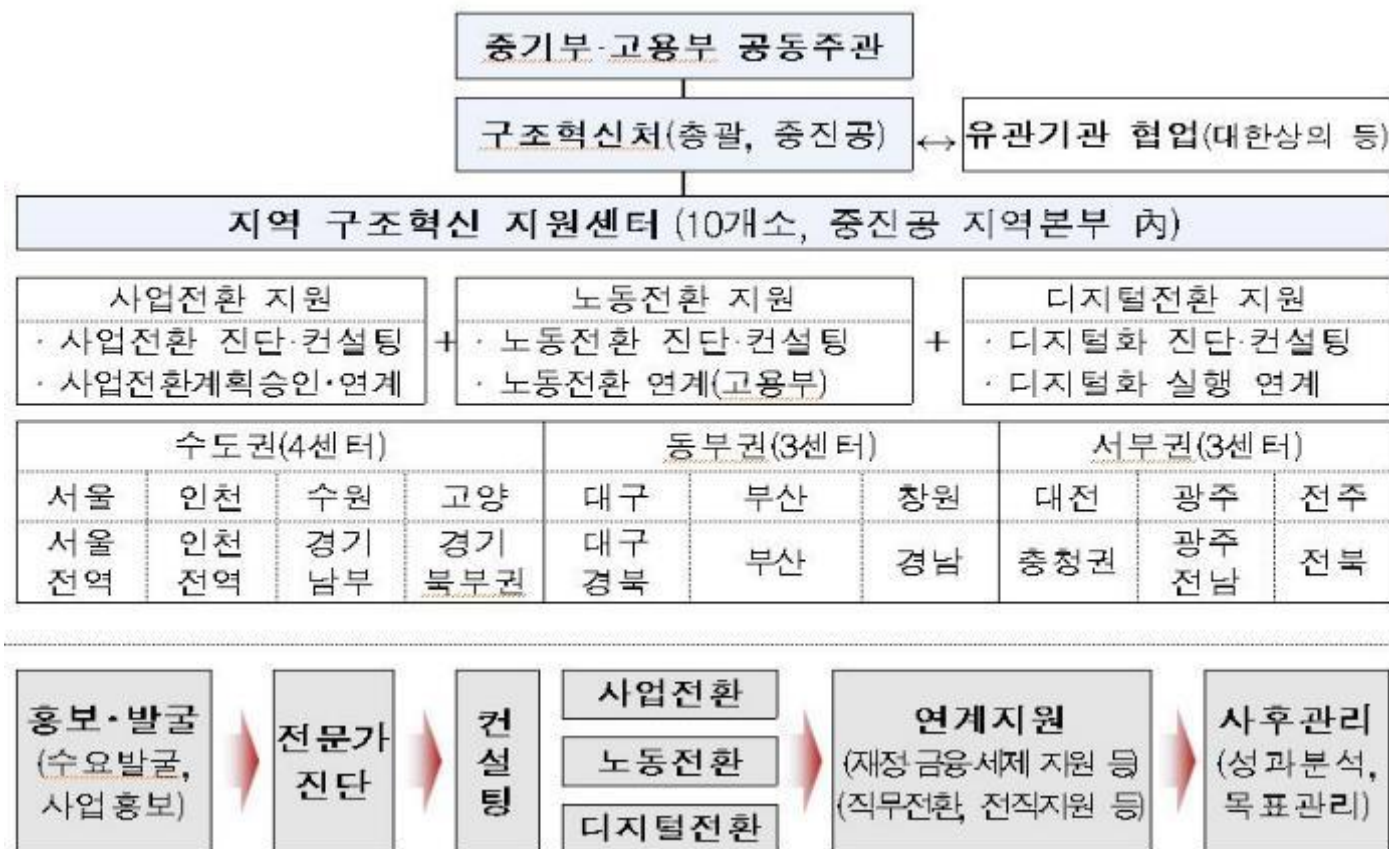
- | 중진공 직접대출

(신규사업 안내) 구조혁신지원사업

□ 목 적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디지털·노동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치(전국 10개; 중진공 지역본부)하고 **종합솔루션**을 제공(중기부·중진공·고용부)

□ 지원체계



□ 지원 내용

- ①사업전환(업종전환, 업종추가 가능) → 사업전환 자금, 정부 R&D
- ②디지털전환(스마트공장화) →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수출사업 등
- ③노동전환 → 사업전환·디지털전환시 직무전환, 근로자유급휴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구조혁신 지원사업 예시】

- ◆ (사례)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기업 A社は **전기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중**, **전환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기술과 자금은 어떻게 지원 받을지 고민중**
- ◆ (진단·컨설팅) A社 진단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실시 및 후속 **지원사업 연계**
- ◆ (패키지 지원) 사업전환 + 노동전환 **지원사업 패키지 지원**
 - ① (사업전환) 사업전환자금, **중기부 R&D** 지원받아 **기술개발 및 공장 증설**
 - ② (노동전환)
 - (사업주 지원금) 노동전환 지원금,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등
 - (교육훈련) 유급휴가훈련, 산업구조변화 특화훈련,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 등

Q & A

1. 소상공인의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가능 여부

상시종업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공단을 통해서 대출(소상공인은 소진공, 그 외 중진공) 다만, 제조업(재무제표상 제품매출) 영위기업, 융자공고상 중점분야(혁신성장 분야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중진공에 자금신청 가능

- 상시종업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수(대표자, 임원(등기이사), 일용근로자 수 제외)

2. 신/기보 보증을 받은 경우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불이익은 없는지

신기보 보증을 받은 사실과 관계없이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가능
불이익 없음

3.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

직접대출은 중진공과 기업 양방간 진행하는 자금

대리대출은 중진공-기업의 주거래은행-기업 간 진행되는 자금

대리대출은, 기업이 시설(토지, 건축, 기계시설) 구입시 기존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시설 담보를 주거래은행에 제공)을 진행하고 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대출금의 일부를 중진공 저금리 자금을 섞어서 대출

참 고

정책자금 상담·문의처 (중진공 지역본·지부)

수도권

- 서울(금천구) 02) 2106-7436
- 서울동남부(서초구) 02) 2023-4326
- 서울북부(중구) 02) 769-6431
- 인천(연수구) 032) 837-7026
- 인천서부(서구) 032) 560-2360
- 경기(수원시) 031) 260-4940
- 경기동부(성남시) 031) 760-9000
- 경기서부(안산시) 031) 783-0609
- 경기남부(화성시) 031) 899-9106
- 경기북부(고양시) 031) 920-6739

충청권

- 대전(대전시) 042) 281-3736
- 세종(세종시) 042) 281-3703, 3705, 3756
- 충남(천안시) 041) 589-4545
- 충북(청주시) 043) 230-6800
- 충북북부(충주시) 043) 841-3600

전라권

- 광주(광주시) 062) 600-3000
- 전북(전주시) 063) 210-9924
- 전북서부(군산시) 063) 460-9800
- 전남(무안군) 061) 280-8070
- 전남동부(순천시) 061) 729-1556

강원권

- 강원(춘천시) 033) 269-6900
- 강원영동(강릉시) 033) 649-9373

경상권

- 대구(대구시) 053) 606-8415
- 경북(구미시) 054) 440-5924
- 경북동부(포항시) 054) 288-7342
- 경북남부(경산시) 053) 603-3300
- 부산(사상구) 051) 630-7429
- 부산동부(해운대구) 051) 745-5928
- 울산(울산시) 052) 703-1125
- 경남(창원시) 055) 270-9753
- 경남동부(김해시) 055) 310-6624
- 경남서부(진주시) 055) 751-2905

제주권

- 제주(제주시) 064) 754-5156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11-3655
- * () 안은 각 지역본·지부 소재지
- * 홈페이지(www.kosmes.or.kr) 내 오시는 길, 관할지역 참조



감사합니다